

「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」 입안계획서

1. 제명

- 「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 고시 제2021-41호, '21.3.30.)

2. 개정사유

- 관세법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1조의2 과세환율 개정(시행일: '22.9.18.)에 따른 내용 반영
-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(ACVA) 결정 후 변경 신청 시 잠정가격 신고 허용을 통해 납세자 편의 확대
- 법정 외 불필요한 관세평가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문구 및 명칭 통일 등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정비

3. 주요 개정내용

- 과세환율 개편(§3) : 외국환매도율 → 기준(재정) 환율
 - ①기준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,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 선정 규정 삭제 등
- ACVA 변경 신청 시에도 잠정가격신고 허용(§6)
 - ACVA 결정 이후에 ACVA 변경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 잠정가격신고 허용
- 관세평가자문위원회 폐지(§53~56)
 - 심사행정 자체 위원회·협의회 개편 계획('21.12.30)에 따른 법정 외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

4. 제정·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

조문번호	법령위임근거 조항
○ 제3조	○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○ 제6조	○ 관세법 시행령 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4호에 대한 예시를 규정함

5.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

6. 시행일자 : 2022. 00. 00.

7.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처 : 관세청 심사정책과
- 담당자 : 박수경 사무관(042-481-7628), 손동희 주무관(042-481-7767)
- 제출기한 : 2022. 00. 00.
- 제출방법
 - 전자메일 : skskpark@korea.kr, legendhee@korea.kr
 - 우편 :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심사정책과
 - 팩스 : 042-481-7869